

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05년 3월 4일(충청북도교육감)

나. 회부일자 : 2005년 3월 7일

다. 상정일자 : 2005년 3월 18일(제1차 교육사회위원회)

2. 제안설명 요지(교육국장 노재전)

가. 제안이유

-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기본지침으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일·숙직수당 책정방법이 중앙지침에 의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변경됨에 따라, 일반행정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당직수당을 정하기 위한 것임

나. 주요골자

- 당직수당을 1인 1회당 30,000원으로 하고(안 제3조),
-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직수당을 당일 지급함(안 제4조)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이중갑)

- 금번 제출된 「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안」 은,
 - 지금까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1인 1회당 10,000원씩 지급해 왔던 당직수당을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(교육인적자원부 교육재정지원과-663, 2004. 5. 11),
 - 지방자치단체 일반행정기관 및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금액을 인상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됨

- 다만,
 - 당직수당 인상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액 및 확보 대책,
 - 또, 조례 제정이 지연된 사유,
 - 그리고 조례를 2005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수정가결

가. 수정이유

- 동 조례를 2005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지 않고 조례 시행일
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

나. 주요골자

- 동 조례를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
부칙 조항을 삭제함

7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9. 첨부서류

-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안에
대한 수정안
-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안

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제안년월일 : 2005년 3월 18일

제안자 : 장준호 의원외

□ 제안이유

- 동 조례를 2005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지 않고 조례 시행일
부터 적용토록 하기 위함

□ 주요골자

- 2005년 1월 1일부터 동 조례를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부칙
조항을 삭제함

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안에
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- 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조 문 대 비 표

제 정 안	수 정 안
<p>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</p>	<p>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</p>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당직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(제정안과 같음)</p>
<p>제2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위원회·충청북도교육청 및 직속기관, 지역교육청과 그 소속기관, 초·중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공립의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.</p>	<p>제2조(적용 범위) (제정안과 같음)</p>
<p>제3조(당직수당 지급) 당직근무자에 대한 당직수당은 1인 1회당 30,000원을 지급한다.</p>	<p>제3조(당직수당 지급) (제정안과 같음)</p>
<p>제4조(지급시기) 당직수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일 지급한다.</p>	<p>제4조(지급시기) (제정안과 같음)</p>
<p>부 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</p>	<p>부 칙</p> <p>..... 시행한다.</p>

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안

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당직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위원회·충청북도교육청 및 직속기관, 지역교육청과 그 소속기관, 초·중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공립의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.

제3조(당직수당 지급) 당직근무자에 대한 당직수당은 1인 1회당 30,000원을 지급한다.

제4조(지급시기) 당직수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일 지급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